

제2515호
2017. 05. 0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조 려
제137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37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137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자원에 관한 조례 10
- 규 칙
제683호 : 불합리한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16
- 훈 령
제161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4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74호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 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u>13.</u> (생략)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 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u> <u>14.</u>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범죄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 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75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 ① 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다만, 구 재정운영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 를 “안정자금은 4천만원
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2.8%” 를 “연 1.8%”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다만, 구 재정운영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4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 ----- -----4천만원----- ----- -----.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8%로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②---- ----- 1.8%-----.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용자한도 증액 및 대부이율을 하향조정하고 유희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4조(세출)“구 재정운영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 회계 전출 및 구의회 사전보고” 추가 명시
- 나. 제10조에 규정한 용자한도 및 이율 등 변경
 - 제10조제1항 중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를 “4천만원 이하”로 개정
 - 제10조제2항 중 용자금 대부이율은 “연 2.8%”를 “연 1.8%”로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76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하 "소공인"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서 소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울특별시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4.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소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공인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소공인 지원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재정국의 과장 2명
2. 소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공인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는 도시형소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제1조, 제2조)
-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제3조)
- 다. 도시형소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특별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 제5조)
- 라. 도시형소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 마. 도시형소공인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 바. 도시형 소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8~10조)

불합리한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8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1부터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설치비용보조 또는 용자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설치비용보조 또는 용

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6호, 8호 및 9호서식을 별지 18부터 별지 2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우수	
			보통	
			미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당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우수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합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당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 번호		제 회 번		⑤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한문)	② 생 년 월 일 . . . (세)	③ 성 별 남 ☐ 여 ☐	④ 희망지역 제1지역 시 군		※ 등록심사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	㉠	
⑥ 현 주 소						(사진부착)		
⑦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⑧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⑨ 자 격 면 허				⑩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⑪ 특 기		⑫ 취 미		⑬ 운 동		⑭ 종 교		
⑮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⑩ 재산상황 가. 부동산(평) 나. 동 산(원)						
⑪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⑫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별	연령	직업	최 종 학 력	비고
첨 부 서 류	호 적 초 본	신원증명원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통 수	통	통	통	통	통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인) ⑬ 우 무 인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 ④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⑤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⑥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⑦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 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 ⑧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 ⑨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⑩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⑪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⑫ 재 산 상 황 ... 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 ⑬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 ⑭ 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 가. 본적을 전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 나.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 다. 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 마. 8.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주소를 기재한다.
-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 무 분 야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			
전 번 (자택)	화 호		근 속 기 간	년 월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 무 상 한 일 연 월 일	년 월 일
수 당 청 구 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담당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5>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6>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	-----	------	------------------------------------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소속 부서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소속 부서	→	지급결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	신청인 통지 소속 부서	→	지급 지방자치단체
---------------	---	-------------	---	---------------------	---	-----------------	---	--------------

<별지 7>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 일반직(안7제 제외) [] 특정직() []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4호서식) 1부	수수료 없 음
------	---	------------

확인	인사담당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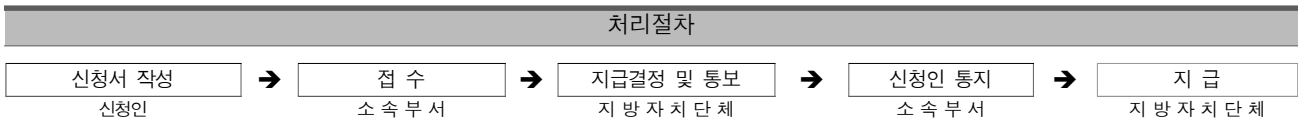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별지 9>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10>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별지 6호서식】

경로당 회원 명단

경로당명	회원명	주 소	<u>생년월일</u>	회 원 가입일	연락처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대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부신청금액	금 원()				
대부금사용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전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대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현황	업체(상호)명		업 종	
	소 재 지			
사업계획	대부금운영 계 획			
	예상소득금액			
	대부금상환 계 획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코자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별지 1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대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자금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발급번호 제 호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자금액		용자구분	1 소득지원자금 2 생활안정자금	
귀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반기 용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용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대부조건 : 1. 대부금 상환은 년거치 년 회씩 년 균분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입니다. 2.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용자구분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용자금내역	원 금	금	원(W	)	
	상환금액	금	원(W	)	
	상환잔액	금	원(W	)	
	연장신청액	금	원(W	)	
당초상환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차용증서					
1. 대여금액		금		원(W	)
2. 대여기간		○ 거치기간 :	. . 부터	. . 까지	
		○ 상환기간 :	. . 부터	. . 까지	
3. 이자율		○ 대여금리 : 년 %			
		○ 대출금리 : 년 %			
4. 상환조건					
5.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용, 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 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별지 16>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수혜가구 관리카드

○ 수혜가구현황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 화 번 호			
가족수	명	대 출 일 자		용 자 금 액		용 자 금 용 도	
상환기일	1차	· (원)		2차	· (원)		

○상환실적

회수	년 월 일	상 환 일	비 고	회 수	년 월 일	상 환 일	비 고

○주소 변동 상황

변동년월일	변 동 주 소 지	세 대 주	기 록 자	비 고

○ 특기사항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명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직명 성명 (인)

<별지 17>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설치비용보조 또는 용자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관리카드)

1. 설치자 인적사항					
주 소		성명		생년월일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기존시설: 대 ○보조금지원시설: 대	
주차형태		조경식재 형 태		공사 기간	. . . ~ . . .
총설치 비 용	원	자비부담	원	보조금 지 원	원
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18>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용료	
허 가 조 건	
-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허가목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 장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재물의 확산·날아파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에 예외로 한다. (삭제 2002.03.29) -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19>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명칭)		②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별지 20>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받은 날짜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 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 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2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명(명칭)	(한 자)	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 서식에 대한 정비
- 나. 별지 서식의 인용 규정 변경 및 용어 수정 등 상위법규 제·개정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61호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점 용 목 적		거리가게 운영		⑥ 인 접 대 지	
⑦ 점 용 장 소 (도 로 주 소)				⑧ 점 용 면 적 (가 로 x 세 로)	m × m = m ²
⑨ 점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9조와「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⑩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 연장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점 용 목 적		거 리 가 게 운 영		⑧ 인 접 대 지	
⑨ 점 용 장 소 (도 로 주 소)				⑩ 점 용 면 적 (가로x세로)	m x m = m ²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근 거 법 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 의 사 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대리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운영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허가가 취소됩니다.				
					⑪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임자	○○○
담당자	○○○
연락처	3396-○○○○



서울중구



도로점용허가증

제 201 -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 운영시간	
5. 점 용 료	

허 가 조 건

1. 거리가게 영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 외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리가게 영업은 지정한 자가 하여야 하고 증표를 부착하며, 타인 또는 종업원을 고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리가게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0:00 ~ 00:00 까지 정해진 시간으로 하며, 영업 종료 후에는 이동보관 하여야 한다.
4. 영업 취급품목은 승인된 것에 한정하며, 상표법 등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산 등 자격조건을 심사 1년 마다 기간을 연장 한다.
6. 도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거리가게 영업권은 별개로 취급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종료 시 동시 소멸한다. (단, 사망 등 직계가족 승계 시에는 전 운영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7. 거리가게 운영자는 세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며, 위반사항 통보 시 허가취소 등 책임을 진다.
8. 거리가게 운영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결과 구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 계고,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거리가게 질서확립 차원의 처분을 받는다.
9. 거리가게 영업자는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물건 등을 적치해서는 안 되며, 거리가게 영업 중이나 종료 후에도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거리가게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11. 질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영업을 못하는 사유 발생 시는 사전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 이상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위 사항 각 호의 준수사항에 대해 연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거리가게

영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한다.

13.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중구 거리가게 관리대장

운영자 정보					
관 리 번 호	No.			운영자 사진	운영보조자 사진
운 영 자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운 영 보 조 자	성명 : (생년월일 : , 관계 :)				
	주소 :				

시설정보				
설 치 일 자	. . .	제 작 사	(☎)	
인접지 주소				
점용지 주소				
점 용 면 적	㎡ (가로 m × 세로 m)		계약전력	kw 일반용전력(갑)
취 급 품 목				

거리가게 사진	

참고사항

관리번호	No.
------	-----

이력 사항							
도로점용료	기준 연도	산출기간	면적(m ²)	점용료(원)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비 고

	기준 연도	산출기간	시설물 가 액	대부료(원)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비 고
거리가게 대 부 료							

[illegible]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개인 정보 보호법」 위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 서식에 대한 개정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